

報道資料

이 자료는 1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대우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와 원칙적인 합의도출

主要內容

□ 2000년 1월 22일(토) 오전 오 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대우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대우해외채무에 대한 조정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 주요 합의내용 : 별첨

* 운영위원회(9개·은행): 체이스-맨하탄, HSBC, 도쿄-미쓰비시, ABN Amro, Arab, 시티, 다이이찌강교, 국립호주은행(NAB), West Deutsche Landes은행

□ 앞으로 국내채권단은 오늘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공식적인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모든 해외채권기관에게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하고

- 해외채권기관은 각자 개별적으로 동 채무조정방안 수락여부를 정해진 기한내에 우리측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 통보된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우리측이 동 채권기관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도록 추진될 예정임

報道資料 生產部署 : 企業構造調整委員會 事務局 TEL : 789-4224

企 業 構 造 調 整 委 員 會

합의된 대우 해외 채무조정 방안

1. 채무조정방안의 주요내용

- 채무조정대상 :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및 그 현지법인에 대한 무담보채권(시장을 통하여 발행된 채권도 포함)

⇒ 총 채무조정 대상 규모 : 약 48.4억불

- 채무조정방안 : 우리측 채권금융기관이 추진중인 Work-Out 프로그램에 우리측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측에 매각

- 현금 매각시 적용되는 가격 : 전체 평균 39~40%

- 본사는 계열사별로 정해진 할인비율을 적용하고, 현지 법인은 8개 그룹으로 나누어 할인비율을 적용
- 다만 (주)대우의 경우 본사와 현지법인 모두에게 동일한 할인비율을 적용

	본사	현지법인
(주)대우	32.3%	
대우자동차	35%	
대우전자	35%	8개그룹으로 나누어
대우중공업	67%	31.5~95%
전체평균	39~40%	

- 해외채권기관은 보유채권의 일부만을 Work-Out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매각할 수 없음

- 해외채권매입기관 : 우리측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 채무조정방안의 실행조건 : Work-Out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우리측에 매각할 채권의 비율이 회사별(현지법인포함)로 90%이상이 되어야 채무조정방안이 실행됨
- Out-of-the-Money Warrants : 제한된 범위내에서 Warrants를 부여할 수 있는방안을 추후 협의
 - * Out-of-the-Money Warrants : 회사의 사정이 예상외로 좋아졌을 때 그 성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 기준일 : 대우 계열사에 대한 국내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1999년 8월 26일
- 미지급이자처리 : 2000.1.31일까지의 이자(1.3억불)는 지급
- 담보채권 : 담보권을 포기하는 경우 무담보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음
- 제3자에 대한 권리 : 우리측 채권금융기관이나 SPC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외채권기관의 제3자에 대한 권리 (예: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를 인정

2. 향후 추진일정

- 구체적인 채무조정계획안과 Out-of-the-Money Warrants 방안을 2월초까지 확정
- 우리측은 모든 해외채권기관에게 2월중순까지 법률적인 문서를 통해 채무조정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
- 해외채권기관은 3월 중순까지 참여 여부를 우리측에게 통보
 - 참여여부 결정에 4주간의 시간을 부여
 - 필요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에 해외채권기관 설득을 위한 Road Show 추진
- 해외채권기관별 대상채무 유무 및 채무규모에 대한 확인 작업을 3월말 내지 4월초까지 완결
- 4월초에 대금지급하고 모든 절차를 종결

()

Press Release

January 22, 2000
Hong Kong

Agreement in Principle Reached Regarding Daewoo Foreign Debt

Mr. Hogen Oh, Chairman of the Korean Corporate Restructuring Committee, the Steering Committee of Foreign Lenders of Daewoo Group of Companies, and representatives of Daewoo announced today that a non-binding agreement in principle has been reached on the principal terms of an accord under which an offer will be made to purchase for cash the loans made by foreign creditors to the Daewoo companies. The prices to be paid for debt tendered in the offer will vary depending on the debtor and guarantor, if any. If all debt is tendered, the purchase price on an overall basis will be the equivalent of between 39% to 40% of face value. In addition, tendering creditors will be entitled to receive out-of-the-money warrants, the terms of which remain subject to further discussion. The agreement in principle reached today remains subject to documentation. The parties intend to finalize agreement on a detailed term sheet, including the terms of the warrants, as soon as practicable. Subject to final agreement, the Steering Committee intends to recommend to all foreign creditors that they participate in the offer.

Mr. Hogen Oh said "Today's development marks another important step in the successful restructuring of the Daewoo companies."

The Steering Committee of Foreign Lenders consists of nine banks: The Bank of Tokyo-Mitsubishi, Ltd., The Chase Manhattan Bank and HSBC, the Co-Chairs, and ABN Amro Bank N.V., Arab Bank plc, Citibank, The Dai-Ichi Kangyo Bank, The National Australia Bank, Westdeutsche Landesbank, and represents approximately 30% of the total unsecured foreign debt of the Daewoo Companies.

대우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와
원칙적인 합의관련 Q & A

2000. 1. 22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목차

1. 이번 대우의 해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 의미는?
2. 대우 해외채권의 규모는?
3. 이번 해외채권단과의 매입(Buy-out)합의된 채무는?
4. 협상 추진경위
5. Buy-out 회수율 결정근거 (왜 최종협상에서의 회수율이 올랐는가?)
6. 국내 워크아웃 비율과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7. 해외채권단에게 특별대우 한 것이 아닌가?
8. 담보채권의 처리는?
9. 전체 평균회수비율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39~40%로 합의된 이유는?
10. (주)대우에 대해서 본사와 현지법인에 대해 동일한 회수비율을 적용하게 된 이유는?
11. Out-of-the-Money Warrants에 대해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12. 앞으로 해외채권기관과의 buy-out최종합의는 어떻게?
13. 지급되지 않던 이자는 어떻게 처리키로 했는가?
14. 해외채권 매입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국내은행이 부담한다면 자금부담 어려움은? 공적자금 투입은?
15.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6. 그동안 해외채권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법적 소송은 이번 합의로 어떻게 해결되는가?
17. 오후근위원회장과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가 공동발표한 보도자료를 “구속되지 않는(non-binding) 합의”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는데 “non-binding”이 들어간 이유는?

1. 이번 대우의 해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 의미는?

- 이번에 해외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와 원칙적인 합의를 이룸에 따라
 - 대우의 워크아웃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 더우기 국내금융시장도 대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이번 대우의 해외채무조정 합의는 국내외 등등대우 원칙과 국제관례에 따른 손실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 해외금융기관들도 그동안의 잘못된 예신행위에 대해 충분의 책임을 지는 사례가 되었으며
 - 이에 따라 우리기업에 대한 예신공여가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건전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기를 조성하게 됨
- 또한 국제관행에 비추어 매우 짧은 기간에 해외채권단과 원칙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서 우리경제 관리능력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2. 대우 해외채권의 규모는?

- '99. 6월말 현재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4개 계열사(현지법인 포함)의 해외금융기관(bond형태 포함)에 대한 채무규모는 65.71억불
 - 담보채무가 13.06억불, 무담보채무가 52.65억불임
 - 대우 4개사 본사의 채무가 15.5억불, 해외현지법인의 채무가 50.21억불임
 - 계열사별로는 (주)대우가 38.24억불로 가장 많으며, 대우자동차가 15.71억불, 대우전자 7.34억불, 대우중공업 4.42억불임

(백만불)

	담보채무			무담보채무			계		
	본사	현법	계	본사	현법	계	본사	현법	계
(주)대우	0	100	100	1083	2641	3724	1083	2741	3824
자동차	9	812	821	37	713	750	46	1525	1571
전자	21	228	249	119	366	485	140	594	734
중공업	23	113	136	258	48	306	281	161	442
계	53	1253	1306	1497	3768	5265	1550	5021	6571

3. 이번 해외채권단과의 매입(Buy-out) 합의된 채무는?

- 대우의 해외채무중 이번에 해외채권단과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룬 매입대상채무는 대우 4개사(본사 및 해외현지법인)의 무담보채무임
- 대우 4개사의 무담보채무는 총 52.65억불('99. 6월 말 현재)이나 이번에 합의한 매입대상규모는 일부 해외현지법인 채무를 제외한 48.4억불임
 -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해외현지법인 채무
 - ① 이미 파산한 해외현지법인 채무 : 독일 대우자동차 판매법인
 - ② 해외채권기관간 구조조정 방안이 합의된 해외현지법인 채무: 프랑스 대우전자 현지법인, 베네룩스 자동차 판매법인
 - ③ 실질적으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해외현지법인 채무 : 폴란드 대우자동차 현지법인, 우즈벡 대우자동차 현지법인

4. 협상 추진경위

□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위원회(오호근 위원장)가 중심이 되어 해외채권단과 협의해 왔음

□ 주요 협의경위

- '99. 8/18일 해외채권단에 대한 대우설명회 개최(서울)
- 대우 12개 계열사의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99. 8/26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오호근 위원장이 우리측 협상대표로 결정
- 그후 대우측 자문기관 선정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법률회사, Lazard 투자은행, 신&김 국내 법률회사)
- 해외채권단은 협상을 대표할 9개은행의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자문기관 선정 (Shearman & Sterling법률회사, Ernst & Young, 김 & 장 국내법률회사)
- 이후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채무지급유예 협의(Standstill)를 진행하였으나,
- '99. 10/28일 동경에서 개최된 해외채권기관과의 협의에서 공식적인 standstill 합의도출은 이루지 못함
- 그러나 해외채권기관들도 법적소송을 자제키로 합의하는 등 사실상 채무지급을 유예 (비공식적 standstill)

- '99. 12/7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대우 4개사의 해외채권 매입방안(buy-out)을 마련하여 해외채권단에 이를 제안 (대우 4개사 본사 및 현지법인 평균 매입율 34%)
- '99. 12.23일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대우 4개사 평균 회수율을 59%로 제안
- '99. 12/29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해외채권단에게 대우 4개사 평균회수율을 36.5%로 수정하여 제안
- '00. 1/13일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자신들의 제안 회수율을 59%에서 45%로 대폭 낮추어 수정제안하고 최종 협상을 할 것을 제안
- '00. 1/20일 홍콩에서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과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의 해외채권 매입협상을 시작
- '00. 1/22일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와 해외채권 매입율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 (매입율 평균 39~40%)

5. Buy-out 회수율 결정근거 (왜 최종협상에서의 회수율이 올랐는가?)

- 당초 협상전략상 협상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수율을 보수적 수준으로 제시
 - 현지법인 회수율을 기업존속가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청산가치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 현지법인 채무에 대한 본사 혹은 타 회사의 지급보증은 인정하였으나, 본사채무에 대한 타회사의 지급보증은 인정하지 않았음
- * 예시 : (주)대우 본사가 지급보증한 스페인 대우전자 현지법인 채무에 대한 회수율 산정방법
$$\text{회수율} = \text{채무금액} \times \text{스페인 대우전자 현지법인의 회수율}(A) + \text{채무금액} \times (1-A) \times (\text{주})\text{대우 본사의 회수율}$$
-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보수적 수준으로 제시하였던 요인들을 현실화함에 따라 회수율이 상승하게 된 것임
 - 현지법인의 회수율은 기업존속가치 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약 1.5%p 내외, (주)대우 본사채무에 대한 타 회사 지급보증을 인정함에 따라 약 1.5%p내외가 상승하였음
- * (주)대우 본사에 대한 대우증공업 및 자동차의 지급보증규모 : 약 1.3억불

6. 국내 워크아웃 비율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 기본적으로 현금매입비율은 국내 워크아웃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해외채무의 경우 과거에 이루어졌던 계열사간 일부 비정상적 거래를 정상화시킨 후 회수율을 산정하였고
 - 국내채권단에게 주어진 장기CB나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의 가치를 현가로 일률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국내 워크아웃 비율과 해외채권 매입비율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7. 해외채권단에게 특별대우 한 것이 아닌가?

- 이번 해외채무조정방안은 국내외채권단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마련되었고, 채무조정방안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다만, 해외채권기관에게는 국내 워크아웃에 참여하거나 현금매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은 있으나,
 - 이는 문제기업의 채무구조조정을 국제관례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

8. 담보채권의 처리는?

- '99. 6월말 현재 대우 4개사의 담보채권은 약 13억불 수준
 - 이번 해외채권단과의 해외채권 매입협의는 원칙적으로 무 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 해외채권기관이 담보권을 포기하고 무담보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해외채권단이 담보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담보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해외채권단이 판단할 사항이나,
 - 담보채권의 대부분이 현지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이번에 담보채권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대우 계열사 본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 * '99. 6월말 현재 총 해외담보채권(13.06억불)중 본사분은 53백만불
에 불과하고 현지법인분이 12.53억불로 대부분을 차지

9. 전체 평균회수비율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39~40%로 합의된 이유는?

- 채무조정방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 복잡한 계열사간 지급보증관계와 담보 유무여부등의 사실관계에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39~40%로 표시하게 된 것임
- 앞으로 개별 해외채권에 대한 대사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한 회수비율이 확정될 것임

10. (주)대우에 대해서 본사와 현지법인에 대해 동일한
회수비율을 적용하게 된 이유는?

- (주)대우 런던 현지법인이 운영하였던 특별계좌에서 보듯이
(주)대우의 경우 본사와 현지법인간에 독립적인 회사운영
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감안되었기 때문임

* 대우 런던법인의 특별계좌(British Financing Center) 개요

- 1981년부터 (주)대우는 런던 현지법인에 특별계좌를 만들어 그동안 총 75억불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였음
- 동 계좌의 자금은 (주)대우 및 (주)대우 현지법인에 의해 마련되어 (주)대우를 포함한 타계열사의 해외채무·이자지급, 해외투자, 해외 건설등에 사용되었음

11. Out-of-the-Money Warrants에 대해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 해외채권단측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임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Out-of-the-Money Warrants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음
 - 이는 향후 대우 계열사의 실제 회사운영성과가 이번에 원칙적으로 합의된 회수비율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 채권기관간 형평성 차원에서 회사성과배분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12. 앞으로 해외채권기관과의 채무조정에 대한 최종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 이번 해외채권단과의 해외채권 매입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해외채권 처리는 완결될 예정
 - '00. 2월초까지 :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와 세부적인 채무 조정계약안에 대하여 협의완료
 - '00. 2월중순까지 : 우리측이 모든 해외채권기관에게 법률 문서로 채무조정방안을 공식제안
 - '00. 3월중순까지 : 해외채권기관들의 채무조정방안에 대한 참여여부 통보
 - 미국등의 국가의 관계법령에 의해 4주간의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
 - 필요한 경우 해외채권기관들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해외설명회(Roadshow)개최
 - * 해외채권기관이 대우 4개 계열사별(본사 및 현지법인)로 기준 금액 90%이상이 Buy-out에 참여하거나 국내 워크아웃 플랜에 참여하여야 함
- '00. 3월말~4월초경 : 개별 해외채권에 대한 대사작업
- '00. 4월초 대금지급으로 모든 절차 종료

13. 지급되지 않던 이자는 어떻게 처리키로 했는가?

- '99. 8/26일이후 (주)대우 본사 및 일부 (주)대우 해외현지 법인들이 이자지급을 중단하였음
- 이와같이 미지급된 이자의 경우 '00. 1/31일까지의 정상 이자(약 1.3억불)에 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14. 해외채권 매입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국내 은행이 부담한다면 자금부담 등의 어려움은 없는가?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것인가?

- 해외채권 매입은 대우계열 워크아웃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인 만큼
 - 대우계열사에 대한 국내채권금융기관, 특히 대우계열의 주채권은행중심으로 매입자금이 마련될 예정이며
 - 현재 은행의 자금사정을 감안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SPC가 향후 매입하게 되는 대우계열 해외채권에 대하여는
 - 해당 금융기관의 SPC에 대한 출자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산관리공사의 자금범위내에서 시장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15.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 그동안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던 대우의 해외채권 처리 문제가 해결되고, 대우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됨으로써
 - 금융시장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함
 - 해외채권 매입에 따른 국내은행의 자금부담도 충분히 예견된 것임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임
-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해외채권단과의 협상 진전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해외채권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서 대우처리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해외채권처리가 타결됨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 해외금융기관들도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신용공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16. 그동안 해외채권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법적 소송은
이번 합의로 어떻게 해결되는가?

- 이번 채무조정방안에 참여하지 않는 해외채권기관의 경우에는 법적 소송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해외채권기관들이 합의된 회수율로 대우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이는 자발적으로 매각하게 되는 것이므로
 - 기존의 해외채권단이 대우 계열사들에게 가지고 있던 법적 권리는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 법적 효력이 자연적으로 상실되거나 해외채권단이 법적 소송을 취하하게 될 것임

17. 오후근위원장과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가 공동발표한 보도자료를 “구속되지 않는(non-binding) 합의”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는데 “non-binding”이 들어간 이유는?

- 이번에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Non-binding”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게 되었음
-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가 세계를 상대로 발표되었고 공신력있는 기관들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실제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할 것임
- 참고로 '98년 1월 뉴욕에서 우리 금융기관 단기채무의 만기연장에 합의했던 경우에도 서명절차등이 없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었음